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5068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피고1. C

2. D

3. E

변론 종결 2016. 3. 8.

판결 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7. 접수 제181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 E는 각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3. 27. 접수 제10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2. 11. 사망한 망 F의 자녀들이고, G는 망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경 및 2013. 7. 15.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 2013. 2. 11.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동 A, 동 D, 동 B, 동 C은 상속재산 중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D, 동 E가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2 부동산 기재와 같음

2013.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기 2013. 2. 11. F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G, 동 A, 동 D, 동 B, 동 C은 상속재산 중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C이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제1 부동산 기재와 같음

2013. 7. 15.

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피고 D과 피고 E는 2013. 3. 27.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3. 7. 1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관련 수사 경과

1) 원고 B는 피고 C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5. 4. 21. '피고 C의 고소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고소인이 직접 발급받아 준 서류로 상속처리를 하였다는 주장, 망 F의 자필 문서, 상속분할협의서, 각 내용증명 및 답변서, H, I의 각 사실확인서, J 법무사의 답변서, 고소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에 의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5. 12. 22. '피고 C은 고소인들의 동의를 얻어 상속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고 C의 모 G의 진술,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등이 피고 C의 변명에 부합하며, 고소인들은 경찰에서 조사할 때와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 C의 요구로 상속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 C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는데 이후 자신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고소인들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변명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며 받아 간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되어 무효인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182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호증, 을 제2, 3, 4, 8, 11, 12,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포함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2013. 3.경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후 2013. 3. 27. 피고 D과 피고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 A은 2013. 3. 13. 본인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원고 B는 2013. 3. 14. 본인의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2013. 7. 15.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후 2013. 7. 17.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원고 A은 2013. 7. 15.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④ 원고 A은 2013. 8. 28. 남양주시 K 전 404㎡와 L 전 843㎡에 관하여 각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도 2013. 8. 28. 남양주시 M 대 330㎡와 건물에 관하여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⑤ 원고들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4. 21. 및 2015. 12. 22.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 C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받아 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의 발급일자와 발급자를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B는 망 F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아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고 C이 2013. 1. 21. 남양주세무서에서 원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망 F가 사망하기 이전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이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은희

판사이봉락

판사김유정

별지